	복수전공 및 부전공 운영규정	제 정 일	2025. 1. 1.
		개 정 일	2026. 6. 1.
		개정차수	2차
		담당부서	교무학사지원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① ‘복수전공’이란 재학 중인 학생이 소속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, 추가로 1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더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위를 받는 것을 말한다.

② ‘부전공’이란 재학 중인 학생이 소속 전공 이외에 타 모집단위의 전공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조 (선발인원)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인원은 학년도별 모집단위 기준 입학정원의 30% 이내로 하며, 신청인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.

② 학과는 강의실 등 교육여건에 따라 신청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4조 (신청시기)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5조 (신청자격)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신청자격은 소속 학과(전공)에서 1개 학기(15학점) 이상 이수하고 취득한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로 한다. (개정 2026. 6. 1.)

②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신청 허가는 재학 중 1회로 한다.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.

1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
2. 성인학습자 과정으로 입학한 자. 단, 동 과정 내의 학과 간 신청은 가능
3. 계약학과로 입학한 자
4.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
5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

제 6조 (신청 및 허가)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학과와 신청학과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무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5. 5. 1.)

② 재학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.

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대상자는 총장의 승인으로 허가한다.

제 7조 (학점이수 및 포기) ① ‘복수전공’과정의 전공학점 이수요건은 2년제 학과(전공)의 경우 24학점 이상, 3년제 학과(전공)의 경우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

② ‘부전공’과정의 전공학점 이수요건은 2년제 학과(전공)의 경우 15학점 이상, 3년제 학과(전공)의 경우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

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요건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, 인정 교과목은 신청자가 선택한다.

④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에서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제외한다.

1. Pass/Fail로 평가되는 교과목
2. 현장실습 교과목

⑤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복수전공 및 부전공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무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. (개정 2025. 5. 1., 2026. 6. 1.)

⑥ 졸업사정 이후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포기할 수 없다.

⑦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소단위 전공과정과 중복 이수할 수 없다.

제 8조 (졸업 및 학위수여) ① 소속 학과(전공)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에게 소속학과(전공)의 학위명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학위명을 병행하여 표기한 1개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.

②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, 소속 학과(전공)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졸업 및 학위수여가 유보된다.

③ 제2항에 의해 졸업이 유보된 자 중 복수전공 중도 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당해학기의 소속전공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.

제 9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